

# 신구조문 대비표

## 1. 제2-1호 의(안) 중앙회 사무규정

현 행	개 정	비 고
<p><b>제3조(용어의 정의)</b>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① ~ ⑥ 생략</p> <p>⑦ 부서라 함은 기획운영본부, 행정지원본부, 노인여가복지지원본부, 취업지원본부, 노인자원봉사지원본부, 교육지원본부, 재능나눔본부, 체육지원본부, 문화예술진흥본부, <b>혜인중앙연수원</b> 및 그 외 사업부를 말한다.</p> <p>⑧ 생략</p>	<p><b>제3조(용어의 정의)</b> -----.</p> <p>① ~ ⑥ 현행과 같음</p> <p>⑦ ----- ----- -----, <b>우정연수원</b> -----.</p> <p>⑧ 현행과 같음</p>	연수원 명칭 변경
<p><b>제4조(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담)</b></p> <p>① 생략</p> <p>② 회원 및 직원의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하여 <b>혜인중앙연수원</b>(이하 '연수원'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, 연수원 운영은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한다.</p> <p>③ ~ ④ 생략</p> <p>⑤ 사무총장은 중앙회의 업무 총괄과 대외적인 정책에 관한 업무를 수행 하며 1사무부총장은 기획운영본부, 행정지원본부, 교육지원본부, <b>혜인중앙연수원</b>. 2사무부총장은 노인여가복지지원본부, 취업개발본부, 체육지원본부. 3사무부총장은 자원봉사지원본부, 취업지원본부, 주간 대한노인회 신문 부서 업무를 담당한다.</p> <p>⑥ ~ ⑦ 생략</p>	<p><b>제4조(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담)</b></p> <p>① 현행과 같음</p> <p>② ----- <b>우정연수원</b>(-----)- -----.</p> <p>③ ~ ④ 현행과 같음</p> <p>⑤ ----- -----, <b>우정연수원</b>. ----- -----.</p> <p>⑥ ~ ⑦ 현행과 같음</p>	연수원 명칭 변경  연수원 명칭 변경
<p><b>제5조[특별 조직 : 연구소·연구원, 위원회 등]</b> 회장은 특정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 등의 특별 조직을 둘 수 있으며,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</p> <p>1. ~ 5. 생략</p> <p>6. <b>혜인(慧人)방송국설립위원회</b></p> <p>7. ~ 21. 생략</p>	<p><b>제5조[특별 조직 : 연구소·연구원, 위원회 등]</b> ----- -----.</p> <p>1.~ 5. 현행과 같음</p> <p>6. <b>우정방송국설립위원회</b></p> <p>7. ~ 21. 현행과 같음</p>	특별 조직 명칭 변경

## 2. 제2-2호 의(안)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 관리 규정

현행	개정	비고
<p><b>제8조(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) )</b></p> <p>① 생략</p> <p>② 피선거권자 (입후보자격) : 피선거권은 선거일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 정회원으로 <b>3년</b> 이상 회원으로 계속적으로 가입 및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며, <b>3년</b> 이상 월 회비를 납부한 학식과 경륜 및 덕망을 갖춘 자로 한다. 다만, 경로당 회장 선거 피선거권자는 선거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 정회원으로 1년 이상 회원으로 계속적으로 가입 및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며, 1년 이상 월 회비를 납부한 학식과 경륜 및 덕망을 갖춘 자로 한다.</p> <p>③ &lt;삭제 2021.3.18.&gt;</p> <p>④ 생략</p>	<p><b>제8조(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)</b></p> <p>① 현행과 같음</p> <p>② ----- (-----) : ----- ----- - <b>1년</b> ----- -----, <b>1년</b> ----- -----.</p> <p>③ &lt;삭제 2021.3.18.&gt;</p> <p>④ 현행과 같음</p>	<p>각급회장 입후보자격 중 정회원 가입 기간 및 회비 납부기간 요건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</p>
<p><b>제9조(선거권이 없는 회원)</b> 선거일 현재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</p> <p>1. ~ 2. 생략</p> <p><b>3. 선거공고일 현재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</b></p>	<p><b>제9조(선거권이 없는 회원)</b> -----</p> <p>1. ~ 2. 현행과 같음</p> <p><b>3. &lt;삭제&gt;</b></p>	<p>각급회장 선거권 행사시 1년 이상 회비 납부를 요건으로 하는 내용을 삭제</p>
<p><b>제10조(피선거권이 없는 회원)</b>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.</p> <p>1. 선거일 현재 회원명부에 <b>3년</b> 이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</p>	<p><b>제10조(피선거권이 없는 회원)</b> 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----- <b>1년</b> -----</p> <p>-----</p>	<p>각급회장 입후보자격 중 정회원 가입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</p>
<p><b>&lt;별지 제2호 서식&gt;</b> <b>선거일 공고</b></p> <p><b>3. 입후보자격</b> : 선거일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 정회원으로 <b>3년</b> 이상 회원으로 계속적으로 가입 및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며, <b>3년</b> 이상 월 회비를 납부한 학식과 경륜 및 덕망을 갖춘 자. 다만, 경로당 회장 선거에서는 선거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 정회원으로 1년 이상 회원으로 계속적으로 가입 및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며, 1년 이상 월 회비를 납부한 자</p>	<p><b>&lt;별지 제2호 서식&gt;</b> <b>선거일 공고</b></p> <p><b>3. -----</b> : ----- ----- <b>1년</b> ----- -----, <b>1년</b> ----- ----- -----</p>	<p>별지 서식을 제8조 제2항 개정사항과 일치토록 함</p>

### 3. 제2-3호 의(안) 지방조직 운영규정

현 행	개 정	비 고
<p>제5조(임원의 선출 및 등록) 각급회의 회장 및 감사는 당해 총회에서 선출하고 <u>부회장과 이사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임·면한다.</u> 다만 임기만료 또는 궐위로 선임 회장을 선출한 때 선임 회장은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선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 1. ~ 8. 생략</p>	<p>제5조(임원의 선출 및 등록) ----- <u>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임·면한다.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8. 현행과 같음</p>	<p>부회 장, 선임 이사는 회장이 임면토록 함</p>
<p>제6조(임원의 임기) ① 각급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으며 <u>각급회 회장은 2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</u> 1. 회 장 및 부회 장 : 4년 2. 이 사 : 4년 3. 감 사 : 2년  ② ~ ⑧ 생략</p>	<p>제6조(임원의 임기) ① 각급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으며 <u>각급회 회장은 3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在任할 수 있다.</u> 1. 회 장 : 4년 2. 부회 장 : 2년 3. 이 사 : 2년, 다만 당연직 이사는 당연직 <u>이사로 선출 · 선임된 회장, 부회장, 노인대학장, 분회장, 경로당회장의 임기에 따른다.</u> 4. ----- : -- ② ~ ⑧ 현행과 같음</p>	<p>2차 중임 (3회 재임) 사항 표현 명확화  부회장과 선임직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</p>
<p>제16조(부의사항) 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 1. <u>임원</u>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. ~ 4. 생략</p>	<p>제16조(부의사항) ----- ----- 1. <u>회장 및 감사</u>----- 2. ~ 4. 현행과 같음</p>	<p>총회는 회장 및 감사만 임명하고, 부회장, 선임이사는 회장이 임면토록 함</p>
<p>제25조(각급회 월별회비) 분회·경로당에서는 지회에 20,000원, 지회는 연합회에 30,000원 이상, <u>중앙회 직할지회 및 연합회는 중앙회에 40,000원</u>의 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 각급회의 실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.</p>	<p>제25조(각급회 월별회비) 분회·경로당에서는 지회에 20,000원, 지회는 연합회에 30,000원 이상의 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 각급회의 실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.</p>	<p>중앙회 납부 상급회비 폐지</p>
<p><u>부 칙&lt;개정 2022.2.7&gt;</u> 제2조(중임제한 경과규정) 제6조 제1항 개정사항 중 ‘2차에 한하여 중임’과 관련하여 개정 전 규정에 의해 1차 중임이 완료된 자는 당해 각급회장 선거에 입후보 불가하다.</p>	<p><u>부 칙&lt;개정 2024. . .&gt;</u> 제2조(중임제한 경과규정 삭제) 2022년 2월 7일 개정된 지방조직 운영규정 부칙 제2조(중임제한 경과규정)는 삭제한다.</p>	<p>2차 중임 정관 개정 전 1차 중임 이미 완료된 자의 입후보를 제한하는 부칙 조항을 삭제</p>

#### 4. 제2-4호 의(안) 교육위원회 운영규정

현 행	개 정	비 고
<p>제1조(목적)            본 위원회는 <u>혜인중앙연수원</u> 등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정관 제38조 제4항에 의거하여 중앙회에 설치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           ----- <u>우정연수원</u>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.</p>	<p>연수원            명칭 변경</p>

### 5. 제2-5호 의(안) 경로당 운영규정

현 행	개 정	비 고
<p>제27조(회비관리)</p> <p>① 생략</p> <p>② 회원의 회비는 입회비와 월회비로 구분하고, 입회비는 20,000원 이내로 정한다. 월회비는 경로당 실정에 따라 월 5,000원 이내로 정할 수 있다. <b>단,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경제적 빈곤자(독거노인, 파산자 등)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입회비 및 회비 납부에 관하여 감·면 할 수 있다.</b></p> <p>③ ~ ④ 생략</p>	<p>제27조(회비관리)</p> <p>① 현행과 같음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<b>단, 특별경로당 회원,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경제적 빈곤자(독거노인, 파산자 등)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입회비 및 회비 납부에 관하여 감·면 할 수 있다.</b></p> <p>③ ~ ④ 생략</p>	<p>특별경로당 회원의 회비 납부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기존 특별경로당(시각장애인 경로당 등)의 회비 납부 의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</p>

6. 제2-6호 의(안) **헤인중앙연수원 설립 운영 규정 → 우정연수원 설립 운영 규정**

현 행	개 정	비 고
<p>규정명 <b>헤인중앙연수원</b> 설립 운영 규정</p>	<p>규정명 <b>우정연수원</b> 설립 운영 규정</p>	<p>연수원 명칭 변경</p>
<p>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(사)대한노인회 정관 제38조 제2항, 제40조 1항에 의하여 고령화시대 노인 인력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<b>헤인중앙연수원</b>을 설립 운영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b>우정연수원</b> -----.</p>	<p>연수원 명칭 변경</p>
<p>제2조(명칭) 본 교육원은 (사)대한노인회 <b>헤인중앙연수원</b> (이하 “연수원”이라 칭한다.)이라 한다.</p>	<p>제2조(명칭) ----- <b>우정연수원</b> ----- -----.</p>	<p>연수원 명칭 변경</p>